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448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원고보조참가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정혜성, 배정원

피 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주

변 론 종 결 2020. 11. 24.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3. 7.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6. 13. ‘F’의 관리수탁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상가의 운영을 재위탁받기로 하는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역금액 매출액의 74.75%(부가세 제외, 순매출액 기준)
- 계약기간 : 2016. 6. 13. ~ 2019. 11. 30.
- 개업일 : 2016. 7. 13.

제20조(계약이행 보증금 및 귀속)

-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상의 예상 매출액인 2억 원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피고는 철거 이행 및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금액인 1,000만 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소외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피고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소외 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초과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제30조(계약의 해지)

- ①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고가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에 실 매출액(월)이 연속 2개월 이상 제출한 사업제안서 예상매출액에 의거하여 예상매출액(월)의 50% 미만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제안서상의 예상매출액은 ① 2016. 7.부터 2016. 9.까지는 400만 원, ② 2016. 10.부터 2016. 12.까지는 700만 원, ③ 2017. 이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증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2. 3. 피고에게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 실매출액이 2개월 이상 예상매출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상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4. 10. 소외 회사에 위 상가의 인도 시기를 2017. 4. 8.부터 2017. 5. 10.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위 상가를 인도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17. 6.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3677호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가 2017. 9. 이후로 임의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고 피고의 출입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영수익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9. 6.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8. 9. 2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9. 1. 31.까지 위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8. 9.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42,0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를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음 날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소외 회사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19. 5. 14.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2017. 2.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9. 6. 12.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19. 1. 31.까지
유지되었다거나 2017. 2. 3.자 해지 통지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2017. 2.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그 결정문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근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2017. 2. 3.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2017. 4. 10.경 소외 회사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원래 2019. 11. 30.까지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는 2019. 1. 31.까지 위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인도 시기가 위와 같이 앞당겨질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인도 시기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 후로서 피고의 상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342,062원은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보이는바, 만약 이 사건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342,062원이 아니라 매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⑥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미 해지되었음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계약이 2019. 1. 31.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이 소외 회사의 해지에 의하여 이미 종료되었으나 다만 상가의 인도 시기만을 2019. 1. 31.까지 늦추면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일환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의 해지 통지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가 공시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 40,000,000원 + 2019. 6. 13.부터 2019. 7. 12.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3. 7.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